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37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5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개선요구사항 반영
- 어려운 한자 용어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

□ 주요내용

- 어려운 한자 용어 정비
 - 보도폭원 → 보도 너비(안 제7조)
 - 수피 → 나무껍질(안 제10조)
 - 수형 → 나무모양(안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31조, 47조)
-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 위탁에 대한 내용 삭제(안 제11조, 안 제18조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 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3

□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붙임 4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0. 3. 18. ~ 2020. 4. 7.(20일)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 5,6,7

- 현행조례(전문)
-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공문
- 방침결재문

< 불임 1 >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보도폭원” 을 “보도 너비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수형” 을 “나무모양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수피 및 수형” 을 “나무껍질 및 나무모양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수형에” 를 “나무모양에”로, “수형” 을 “나무모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수형” 을 “나무모양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수형” 을 “나무모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녹지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녹지과장 허 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숲조성팀장 서 병 구
	담당자 성명·전화	공 성 경 (행정 2346)

< 불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식재기준 등)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,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.	제7조(식재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·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미터이상 확보되어야 한다. 다만, <u>보도폭원</u>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 <u>보도 너비</u> ----- -----.
2. · 3. (생 략) ②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· ② (생 략)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하여 가로수의 기본 <u>수형</u> 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나무모양</u> ----- --.

제10조(바꿔심기 및 메워심기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한다.

1. (생 략)

2.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

3. ~ 5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11조(가지치기)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, 아름다운 수형,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, 통행 공간의 확보, 전송·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.

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18조(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)

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·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, 「산림조합법」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산림

제10조(바꿔심기 및 메워심기) ① ---
---.
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나무껍질 및 나무모양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가지치기) ① ---
---.
- 나무모양에---
---.
나무모양 ---

---.
---.

② ---
---.
---.<단
서 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,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3조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은 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,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1조(등록된 수목, 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) ① (생 략)

② 등록된 수목, 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, 수림의 제거,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,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7조(보호수, 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) ① 관리청은 수형이 아름다운 나

무, 희귀나무, 대형목, 희귀림 및 고령림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, 수림을 보호수, 보호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31조(등록된 수목, 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나무모양

-----.

제47조(보호수, 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) ① ----- 나무모양----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376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6일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가로수의 가지치기 관련 조문에 사용된 “시계화보”의 용어가 한자어이나, 한글로 단독 표기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한글과 한자 병행표기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.

□ 주요골자

- “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화보”에서 “시계화보”를 “시계(視界)확보”로 수정.(안 제11조제1항)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·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·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시계확보”를 “시계(視界)확보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(가지치기)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<u>수형에</u>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, 아름다운 <u>수형</u>,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<u>시계확보</u>, 통행 공간의 확보, 전송·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.</p> <p>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1조(가지치기) ① -- ----- ----- 나무모양에 ----- ----- 나무모양 ----- ----- 나무모양 ----- ----- 나무모양 ----- ----- 시계(視界) 확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.<단서 삭제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1조(가지치기) ① -- ----- ----- 나무모양에 ----- ----- 나무모양 ----- ----- 나무모양 ----- ----- 시계(視界) 확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